



# 여행사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세미나

김근수 회계사

글로벌컨설팅 & (주)글로벌M&A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9-5 영원빌딩 402호, [www.kskim.kr](http://www.kskim.kr)

Tel: 02-539-2831 여행사 회계와 컨설팅, 010-5380-6831 기업 M&A 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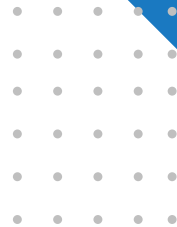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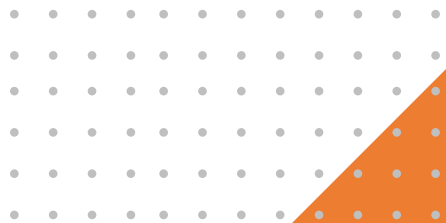
# - 목 차 -

- 1. 국민신문고 등
-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시행
- 3. 알선과 여행사 현금영수증
- 4. 여행사 현금영수증 특수사례
- 5. Q&A



파트 01

**국민신문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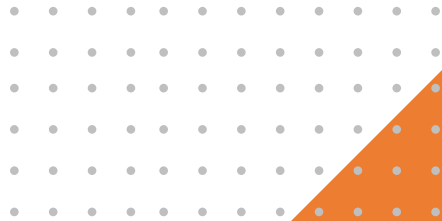
## 국민신문고 질의응답 자료와 국세청 공식 질의응답

1. 아래 내용은 국세청 질의응답도 있지만 대부분 국민신문고 질의응답이므로 실무적으로 적용 시 반드시 국세청 질의응답을 확인하여야 함.
2. 국세청 질의회신이 거의 없어 여행사에서 질의를 하여야 함.



파트 02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의 시행





## 여행사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 여행업은 2025년부터 현금영수증의무발행
- 의무발행사업자가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 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 무기명발행은 현금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발행

● 현금영수증은 이미 시행 중



## 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여행사 고유의 회계와 세무 문제 : 알선수수료, 패키지상품 등  
20% 가산세를 내지만 실무적인 이해 부족



## 현금영수증은 언제부터 의무 발행 하는가?

- 2025년 1월 1일 이후 공급 분부터
- 여행사의 공급시기(여행: 여행 종료일, 호텔과 항공: 판매일)



파트 03

# 알선과 여행사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법령

사업자가  
재화 용역 공급하고  
현금을 받는 경우  
공급 받는 자에게 발행



##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 수수료에 대해 발행하는 이유?

1. 여행사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 공급 받는 자에게 발행
2. 여행사가 공급하는 용역은 여행알선, 항공권 판매대리, 호텔숙박권 판매대리
3. 호텔숙박, 항공운송, 현지여행사 이용 등은 여행사가 제공하는 용역이 아님
4. 따라서 여행사는 알선과 대리 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



일부 여행사(?) 총액 발행 이유?!

'유명' 여행사들 총액발행

총액발행 가산세/조사대상



## 여행사는 모두 알선수수료?

- '알선' 요건: 알선수수료 구분계약
- How to



## 알선수수로 이외의 금액: 수탁금

- 수탁금의 의미

- 호텔비용은 호텔, 항공요금은 항공사, 랜드는 해외여행사 지급처에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을 받음



알선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전체금액을 매출로 보고 부가가치세  
현금영수증 가산세와 부가가치세 추징



## 10만 원은 받은 금액 기준인지 알선 대리 수수료 기준인지?

-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행
- 따라서 알선수수료를 기준으로 10만 원(부가세 포함) 판단



## 10만 원의 기준은 무엇인가?

- '건당 거래 금액'으로 판단
- 건당 거래 금액이란 '당사자 간' '거래 총 금액'



## 그렇다면 수탁금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 수탁금이란?
- 수탁금의 지급자와 부담자
- 여행사는 '심부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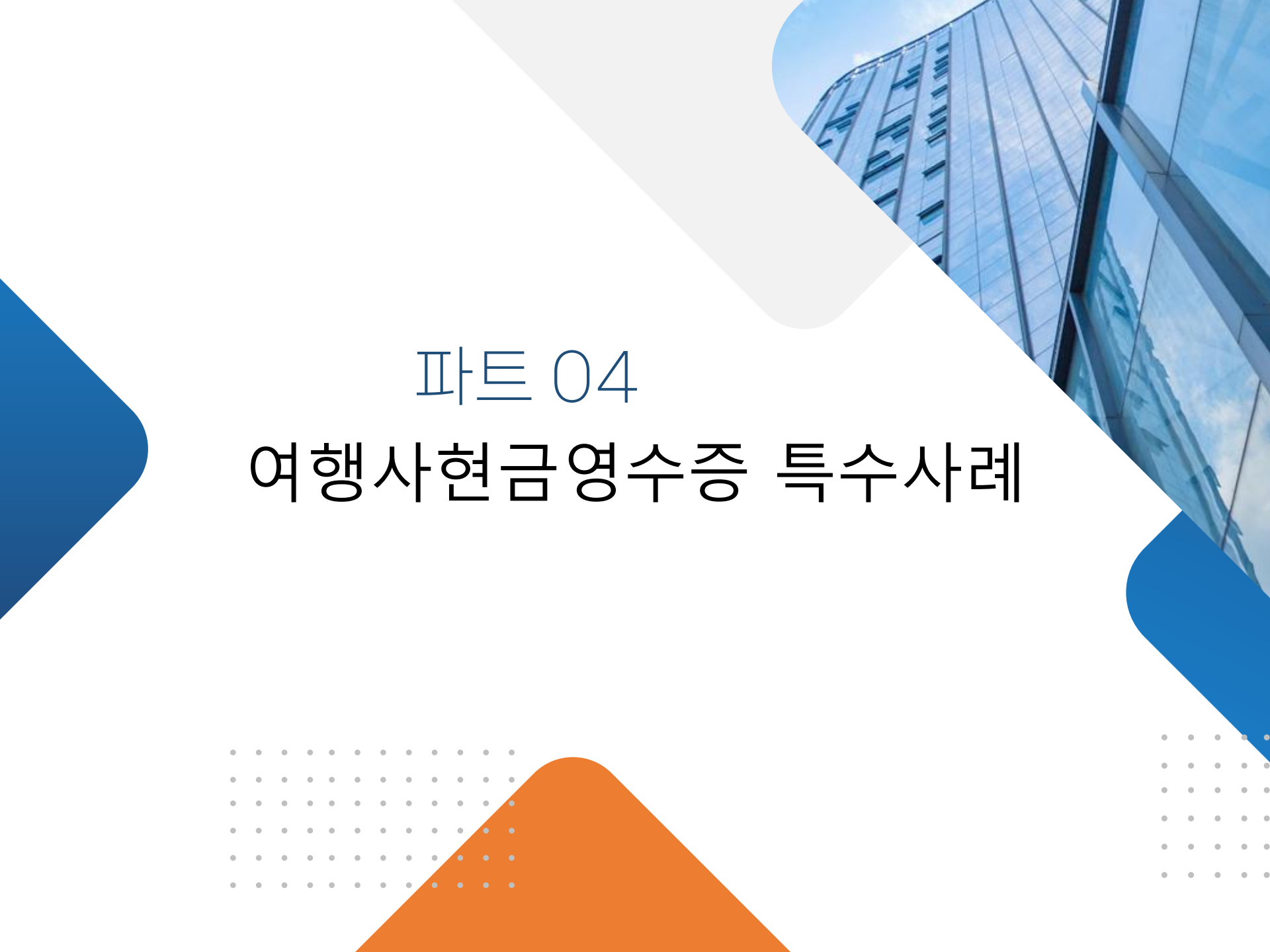
## 그렇다면 수탁금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 수탁금 중 해외의 호텔, 국제선, 랜드(여행사), 음식점 등은 한국 세법이 적용되지 않음
-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아님
- 계약서, 인보이스, 송금, 영수증: 회사에 송금하여야 함



## 그렇다면 수탁금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 수탁금 중 국내 호텔, 국내선 등은 당해 업체가 고객에게 발행하여야 함
- 국제선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고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아님



파트 04  
여행사현금영수증 특수사례



분할하여 받는 경우 10만 원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의무발급여부는 **건당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  
므로 분할하여 받더라도 **합산**하여 판단



## 분할하여 받는 경우 언제 발행하는가?

- 공급시기 & 현금을 받는 때 발행
- 선수금의 경우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에 발행가  
이



## 여행정산과 현금영수증 발행시기

- 세법은 현금을 받고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발행하라고 규정
- 요청하지 않더라도 10만 원이 넘으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발급의무
- 정산이 끝나지 않으면 수수료를 알 수 없음
- 국민신문고의 의견은 정산 후 수수료 확정 시 발행
- 항공사와 항공사의 대리점 정산 시 세금계산서도 확정 시 발행(공급시기로 봄)
- 여행사가 국세청에 문의하거나 협회 질의 결과를 기다려야



## 패키지 여행상품의 10만 원 기준은?

- 국세청의 해석을 보면 "다수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사자들 중 1인으로부터 전부 지급받는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각 개인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1인이 지급한 전체 금액을 당초 각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고객별로 알선수수료가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인지를 각각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패키지 여행상품이지만 여행사는 고객마다 여행알선 용역을 제공
- 여행사도 건당 거래 금액이란 '두 당사자 간' '거래 총 금액'을 말하므로 각각 개인별로 판단???



## 대표로 받을 수 있을까?

- 단체 고객에 대해 한 사람이 받을 수 없음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 단체로 여행을 이용하는 경우 누구에게 발행하는가?

다수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그 중 한 사람으로부터 전부 지급받는 경우

각 개인별로 현금영수증 발급



## 다른 사람 명의로 받을 수 있을까?

- 본인이 아니고 가족 또는 지인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은 위법이다.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5%를 가산세가 부과



## 외국인이나 외국사업자도 발행하는가?

● 외국인 또는 외국사업자에게도 발행의무:

외국인등록번호, 현금영수증카드, 휴대폰번호 등의 신분인식수단으로 발급.

신분인식수단을 모르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발급



## 다양한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어떻게 발행하는가?

- 여러 노선 항공권, 여러 호텔 예약대행, 여러 날짜 알선대리, 복합 예약
- 건당 거래 금액이란 '두 당사자 간' '거래 총 금액'. 당사자 간에 거래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



## 일부는 신용카드 일부는 현금인 경우 어떻게 발행하는가?

- 관광 상품을 백만 원은 현금으로, 2백만 원은 카드, 알선수료는 50만 원
- 현금 결제 비율(백만 원/3백만 원=33%)에 상당하는 166,667(50만 원x33%)원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할까?
- 여행사의 용역대가 이상의 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50만원의 현금영수증을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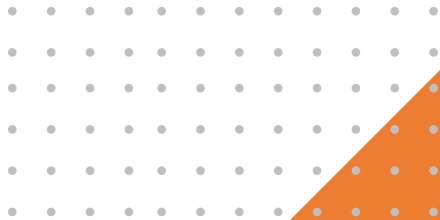
## 랜드 사도 현금영수증은 발행하는가?

- 랜드 사가 여행상품을 여행사에 2백만 원에 내놓았음. 여행사는 5백만 원에 판매(알선수수로 55만 원). 랜드 사는 현지 여행사로부터 22만 원의 수수료
- 여행사가 고객에게 현금영수증 55만 원을 발행, 여행사가 랜드 사에 지급하는 2백만 원은 기타 영수증
-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랜드 사가 공식 한국지사가 아닌 경우, 여행사로 볼 수 있음. 국내여행사는 모객하고 사실상 수수료만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은 랜드 사가 발행



# 여행사 현금영수증 관련 정보

인쇄물 7쪽 QR코드 확인 부탁드립니다.



# Q&A

**글로벌컨설팅 & (주)글로벌M&A**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9-5 영원빌딩 402호, [www.kskim.kr](http://www.kskim.kr)

Tel: 02-539-2831 여행사 회계와 컨설팅, 010-5380-6831 기업 M&A 컨설팅